

#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박 정 · 김태선 · 이학영  
김현정 · 안호영 · 박홍배  
윤후덕 · 안도걸 · 한민수  
허종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·손실에 대한 배상·보상 체계를 제도

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8조 및 제65조).

##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본문 중 “그 밖에”를 “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, 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보상심의회를 둔다. 이 경우 보상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5조 중 “그 밖에”를 “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, 그 밖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제65조(공급 조건의 변경) 인가관  
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 
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  
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  
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  
의 비용부담, 그 밖에 물의 공  
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  
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  
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 
있다.

제65조(공급 조건의 변경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수돗물의 공급  
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 
관한 사항, 그 밖에-----  
-----  
-----.